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안전복지위원회
2022. 12. 12(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46
제안일자	2022. 11. 17.
회부일자	2022. 11. 23.

행정안전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이철구 의원 외 10명

2. 제안이유

- 장기재직자·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의 확대 및 신설로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주요내용

- 공무원이 취임할 때 도지사 앞에서 선서를 하도록 함(안 제2조)
- 공무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 당직근무자의 사고방지 책무 및 사고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겸임 근무하는 자의 복무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파견 근무하는 자의 복무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공무원의 휴가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을 규정함
(안 제13조)
- 연가계획의 수립 및 연가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장기재직 특별휴가일수 확대·신설, 선거업무 종사자 특별휴가일수
부여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특별휴가일수 확대 : 30년 이상 재직자 기존 10일 → 20일
 - 분할사용횟수 확대 : 재직기간별 사용횟수 추가 부여
 - ※ 10년이상 재직자(10일) : 기존 2회 → 변경 3회
 - 20년이상 재직자(20일) : 기존 4회 → 변경 5회
 - 30년이상 재직자(20일) : 기존 2회 → 변경 5회

4. 관련부서 협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무혁신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감사관)

5.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 2022.11.23. ~ 11.28.(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117호)
- 의견제출 : 없음

6. 검토의견

□ 제안이유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1964년 제정되어 1983년 전부 개정 이후 28회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왔으나, 개별 조문과 조항만을 일부개정 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조문과 신설된 조문이 많고, 조문, 자구 등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 규정된 부분을 정비하고,
-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다른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확대하고, 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하기 위하여 제안함.

□ 주요내용

- 본 전부개정안은 경상북도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총 2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전체적인 조문의 정비 외에 ▲조례 제명 변경 ▲특별휴가 중 재해구호휴가 삭제, ▲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분할 사용 횟수 확대,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중앙과 수직적·종속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는 기존 조례 ‘근검과 절약’을 ‘친절과 공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에 대한 친절과 행정에 있어서의 공정함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7조는 특별휴가 중 재해구호휴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장기재직휴가일수 및 분할 가능 횟수를 확대하며,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존 조례 제23조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 자원봉사를 하고자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미 재해구호휴가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¹⁾으로 삭제하는 것임(붙임참조).

- 또한, 30년 이상 근무시 부여되는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30일로 확대하고, 2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횟수를 3회로, 20년이상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횟수를 각각 5회로 규정한 것은 타 광역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분할사용횟수를 확대하여 장기재직자의 휴가 사용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제7조의7(특별휴가)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선거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선서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1983년 전부개정 이후 28회의 일부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조문과 삽입된 조문이 많으며, 조문, 자구 등의 법적 체계가 맞지 않거나 타 법령과 중복규정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며,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분할사용 횟수 확대,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등을 규정한 것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선거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현황

연번	시도별	총 부여일수	세부내용				비고 (*현재 총 부여일수 개정 시점)
			재직기간	부여일수	분할횟수(한도)	소멸여부	
1	경북	40	10년이상	10	2	여	*2017.7.13.개정
			20년이상	20	4		
			30년이상	10	2		
2	서울	50	10년이상	10	2	여	*2014.1.9.개정(신설)
			20년이상	20	4		
			30년이상	20	4		
3	경기	50	10년이상	10	2	여	*2017.8.7.개정
			20년이상	20	4		
			30년이상	20	4		
4	부산	50	10년이상	10	재직기간 별 최소 3일 이상	여	*2015.1.1.개정 3일미만 잔여일수 원칙적 사용 불가 (예외적 허용)
			20년이상	20			
			30년이상	20			
5	대구	50	10년이상	10	재직기간 별 최소 3일 이상	부	*2020.5.11.개정 3일미만 잔여일수 원칙적 사용 불가 (예외적 허용)
			20년이상	20			
			30년이상	20			
6	인천	50	10년이상	10	2	여	*2015.12.28.개정
			20년이상	20	4		
			30년이상	20	4		
7	광주	50	10년이상	10	4	여	*2016.11.1.개정
			20년이상	20	4		
			30년이상	20	4		
8	대전	50	10년이상	10	3	여	*2021.4.9.개정
			20년이상	20	3		
			30년이상	20	3		
9	울산	60	10년이상	60	12회	부	*2022.6.23.개정 (50일 개정 2018.05.17.)
10	세종	45	10년이상	10	4회	여	*2022.4.20.개정
			20년이상	15	4회		
			30년이상	20	4회		
11	경남	50	10년이상	10	5일 단위(2회)	여	*2018.5.3.개정
			20년이상	20	5일 단위(4회)		
			30년이상	20	5일 단위(4회)		
12	강원	50	10년이상	10	2	여	*2020.4.3.개정
			20년이상	20	3		
			30년이상	20	3		
13	충북	50	10년이상	10	2	여	*2021.11.5.개정
			20년이상	20	4		
			30년이상	20	4		
14	충남	60	10년이상	10	8회	여	*2019.2.20.개정
			20년이상	20	8회		
			30년이상	30	8회		
15	전북	50	10년이상	10	분할횟수 없음/자율 사용	부	*2020.5.29.개정 개정 이전 일괄 소급 적용
			20년이상	20			
			30년이상	20			
16	전남	50	10년이상	10	3	잔여일수 5일 이하 이월	*2022.5.19.개정
			20년이상	20	3		
			30년이상	20	3		
17	제주	50	10년이상	10	2(5일단위)	여	*2018.7.13.개정
			20년이상	20	4(5일단위)		
			30년이상	20	4(5일단위)		